

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[별표 15]

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 방법(제47조제4항 관련)

1.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방법

$$\text{일일기준초과배출량} = \text{일일유량} \times \text{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} \times 10^{-6}$$

비고: 1.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

- 가.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: 배출농도 - 배출허용기준농도
- 나.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: 배출농도
- 2.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,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.
- 3.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(mg/L)으로 한다.

2. 일일유량의 산정 방법

$$\text{일일유량} = \text{측정유량} \times \text{일일조업시간}$$

비고: 1.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(L/min)로 한다.

- 2.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 조업시간의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.